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가단530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와 D(E생) 사이에 원주시 F 전 982㎡에 관하여 2024. 1. 22.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E생)에게 원주시 F 전 982㎡에 관하여 2024.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3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였는데, 2023. 8.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4. 3. 13.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10,152,599원의 신용카드대금 지급채무가 있다.

나. D은 2024. 1. 22. 의붓아버지인 피고에게 원주시 F 전 98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4. 1. 22.자 매매(매매대금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는 재산이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D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D이 사고로 다치게 되어 치료비 및 간병비용 등을 의붓아버지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과 피고가 동거하는 인척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매매계약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D에 대한 진료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2022년경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D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준